

2010년 제4회 빈곤포럼

주제 I :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쟁점

정진경

주제 II :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강성호

■ 일시 : 2010. 12. 3.(금) 15:00 ~ 18:00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보드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4회 빈곤포럼

▣ 좌장 :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및 발표자

- 1주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쟁점

정진경(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주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강성호(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팀장)

▣ 토론자

- 원외

지정 토론자

조준용(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호(관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외부 토론자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진영(서강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유태균(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대철(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김을식(경기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원내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장)

남상호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김태완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최현수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목 차

<주제 I.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쟁점>

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 개념과 주요 시각.....	1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와 범주.....	1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시각.....	3
II.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5
1. 사회공헌활동 현황.....	5
III.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특징과 쟁점.....	10
1. 특징.....	10
2. 쟁점.....	11

<주제 II.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I. 서론.....	15
II. 지역가입자의 현황 및 추이.....	17
1. 지역가입자 일반현황 및 추이: 대 사업장가입자.....	17
2. 납부예외자, 체납자 현황 및 추이.....	19
III.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추정.....	24
1. 횡단면 기법에 의한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 추정.....	24
2. 국민연금 수급자 장기전망과 외국의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 비교.....	25
3. 생애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	27
IV. 연금수급권 확대에 따른 노인빈곤 완화.....	35
V. 결론에 대신하여.....	38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쟁점

정진경(광운대학교 행정학과)

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 개념과 주요 시각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와 범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Bowen(1953; 김성진·김종근, 2010 재인용)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속한 사회의 목표와 가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이나 원칙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기업인의 의무'를 의미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CSR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Carroll(1979; Blindheim & Langhelle, 2010 재인용)의 정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이라는 '다층적이며 위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유럽연합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2001; 정진경, 2005 재인용)에서는 CSR이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하고, '기업운영'에서 사회적, 환경적 관심을 통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사와 연구, 국제적 및 국내 각 기업의 CSR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더 나은 사회창조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마음속에 담고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①경제적 책임; 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관계된 책임으로 투자자, 임직원, 소비자에 대한 책임, ②문화적 책임; 마케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소비생활문화를 형성하여 기존의 생활문화를 변화시키고, 학술재단이나 문화재단을 통한 폭넓은 활동으로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책임, ③생태적 또는 환경적 책임;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 ④사회봉사책임; 현재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회공익사업과 소수계층을 위해 수행하는 자선, 기부 등과 관계된 책임으로 사회복지사업이나 난민구제 등 기업이 기업시민으로서 맡아야 할 책임으로 제시하고 있다(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과 영역에 대한 논의는 2005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되

기 시작한 이후 그 관심이 매우 촉발되었으며, 마침내 2010년도 ISO26000 즉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지침이 공식적으로 발간되었다. 그런데, 본 ISO26000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조직이며, 다만 현재는 강제적 의무화가 아니라 권고와 가이드라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ISO26000 지침서는 '사회적 책임'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에 준한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이라 정의하면서, ①건강 및 복지를 포함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②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며, ③적용가능한 법 준수 및 국제행동규범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④조직 전반에 통합 및 사회적 책임 이슈의 관계를 생활화 하는 것이라 하였다. ISO26000 지침서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발전이라는 7개 핵심범주로 하여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ISO26000의 7개 핵심관점과 주요내용

핵심주제	주요 내용
조직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각 이해관계자들의 고른 참여 여성·소수인종 등 소외받기 쉬운 주체들의 참여 보장 등
인권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 노동력 착취 금지 등
노동관행	국제노동기구(ILO)기준 준수, 안정정인 고용관계, 직장내 안전 및 보건관리 등
환경	오염물질, 탄소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등
공정운영 관행	부패 감시, 내부 고발자 보호, 공정 경쟁, 재산권 보호 등
소비자 이슈	소비자 보건 및 안전관리, 공정한 마케팅, 왜곡되지 않은 정보제공, 위조나 표절 금지, 리콜 보장, 가격 구성정보 공개 등
지역사회 참여발전	지역공동체 참여, 고용창출, 책임있는 투자, 조세의무 준수 등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면, 기업인 개인에서 기업운영 차원으로, 자발적에서 국내외 환경의 압박으로, 경제적책임 위주에서 폭넓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공헌은 CSR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인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란 기업의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가장 핵심적 요소이며, 현금기부와 현물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Cary,2004). 우리나라 기업 사회공헌의 역사가 매우 짧은 상황속에서 마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대표하는 것으로 언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혹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CSR과 동등한 용어로 사용된 연구도 많이 발견되어 용어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하였다.

본 발표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기업사회공헌은 CSR의'자선적 책

임'(Carroll); '지역사회 참여 발전'(ISO26000)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영역이라 보고자 한다.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시각

본 발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동기에 의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각을 크게 기업에 초점을 맞춘 시각과,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시각, 그리고 사회구성체적 시각으로 크게 구분 짓고자 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1950-60년대 보웬에 의해 공식화 된 CSR 개념정의에 관한 연구, 70-80년대 기업의 사회적 성과모형, 90년대 이해관계자모형과 전략적 사회적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김희성·박기태·이명진, 2009:3-4) 맥락과 일치한다.

먼저, 기업에 초점을 맞춘 시각으로 '이해관계자 관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지 주주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라는 Friedman(1970)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주의 관점 이후에 등장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집단 혹은 사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Freeman, 1984).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라함은 투자자, 종업원, 고객, 공급자, 주주 등과 같은 일차적 집단과 미디어 혹은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이익집단같은 이차적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Clarkson, 1995).

이해관계자 관점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기에 있어 '기업경량전략론'과 맞물린다. 기업경량전략론은 CSR이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선의경영이론(good management)과 맥을 같이 한다. 기업경량전략론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성장에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긍정적 인식을 얻어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시각은 기업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기업시민론'적 시각이다. 기업의 시민성은 기업과 시장의 존립은 사회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조대엽, 2007). 기업은 사회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부로서 사회공헌활동의 당위성이 부과된다 할 수 있다. 기업시민론의 입장에서 이익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사회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이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에 다시 혜택이 돌아오는 간접적 이익임을 설명한다(선혜진, 2004).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체적 시각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확장은 시장에 할당된 공적기능으로서 기업내 내재화 과정을 거쳐 공공성¹⁾이 재구성되는 현상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공공성이란 국가를 중심으로 부여된 것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히 서비스제공 중심의 비영리단체의 공공성 강화 현상이 일어나고, 1990년대 말부터 기업에게도 보다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기업 내부로 사회공헌조직과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적이윤과 시장의 영역에서도 공공성

1)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사회공유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와 시민 사회, 시장의 구성에 포괄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 구조변동과 사회구조의 재구성을 설명하는데 유용성을 갖는다(조대엽, 2007:5)

즉 시장공공성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조대엽, 2007).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공공지출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로 기업에 할당된 공공성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는 이후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학문적 및 실천적 방향과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기업 사회공헌을 기업경영전략론의 시각에서 볼 경우 주된 관심은 기업 사회공헌의 조직적 성과에 맞추어질 경향이 크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기업 사회공헌의 기업 이미지나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 기부 및 임직원 봉사활동과 같은 기업사회공헌이 조직몰입도나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본 시각은 어떠한 사회공헌활동 방법과 유형이 보다 큰 경영성과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안 제시로 관심이 맞추어질 것이다.

반면, 기업시민론적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주된 관심은 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해당분야 혹은 지역사회, 파트너 기관으로부터의 사회적 성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며, 기업 자원봉사의 기업 및 지역사회 혜택에 관한 논문(정진경·조상미·황정은, 2008) 등이 일부 수행되었다.

공공성의 재구성 시각은 사회학적인 거대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회문제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가능케 한다.

II.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특징

1. 사회공헌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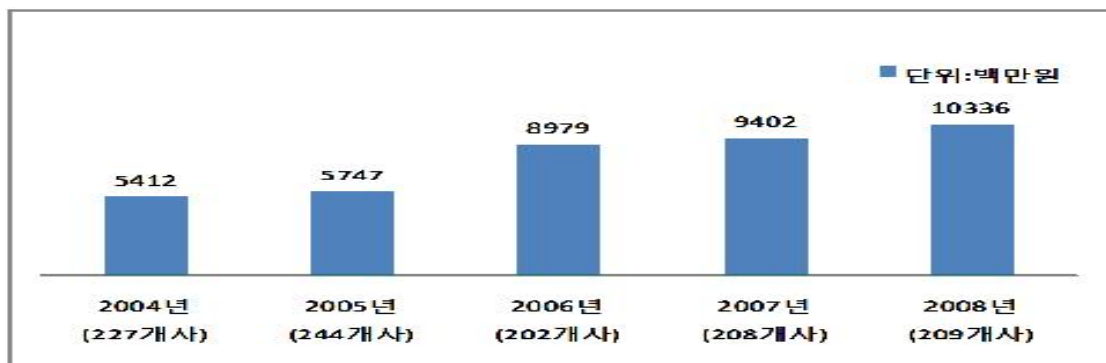
가. 사회공헌활동 지출 규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2년에 한번,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사회공헌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공헌비용 총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도(227개사) 1조2천억원에서 2006년(202개사) 1조8천억원, 2008년(209개사)에는 2조 1천억원 가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기준 응답 기업들의 각 기업별 평균 사회공헌 비용은 103억 3,600만원으로 2004년도 54억 1,2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그림 1 참조).

한편, 사회공헌비용 지출 규모 자체 뿐 아니라 기업의 경상이익 대비한 사회공헌비용 지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2년도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용 지출은 1.2%였으나 2005년부터 2.0%로 증가하였고, 2008년도에는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축소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당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64.

<표 2>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 비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185개)	2004년 (193개)	2005년 (189개)	2006년 (193개)	2007년 (206개)	2008년 (208개)
경상이익	59,816,055	55,397,171	57,686,151	67,072,594	78,321,669	53,498,091
사회공헌 지출비용	746,847	1,032,442	1,164,246	1,789,174	1,954,631	2,160,063
비율추이	1.2	1.9	2.0	2.7	2.5	4.0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65.

나. 사회공헌활동 방식 별 집행액

1) 직접운영 프로그램 분야 및 집행액

기업들이 조직내 사회공헌 전담부서 내지 전담업무를 통해 사회복지, 교육 및 학술, 문화예술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정지원이나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 기업당 평균 직접프로그램 운영비는 11억2천9백만원이었으나 2006년에 들어 2배 이상이 넘는 39억1천2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43억 2천9백만원까지 증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한 분야로는 사회복지 영역이 2008년도에 4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경향이다. 이어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2008년도 12.8%를 구성하고 있고, 교육 및 학술연구 분야가 1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02년 (202개사)	2004년 (201개사)	2005년 (208개사)	2006년 (200개사)	2007년 (198개사)	2008년 (178개사)
전체지출비용	228,100	322,591	395,441	782,386	858,921	830,888
기업 평균 지출비용	1,129	1,706	1,929	3,912	4,231	4,329
사회복지	20.6	40.3	38.4	35.3	25.3	45.2
의료보건	0.7	4.2	5.8	0.3	0.3	0.4
교육·학교·학술연구	17.2	6.8	7.2	9.9	10.1	10.5
문화예술 및 체육	22.2	11.3	9.8	8.3	9.7	12.8
환경보건	0.4	5.6	7.9	1.8	3.1	1.2
응급 및 재난구호	0.3	0.8	0.2	0.2	0.3	0.1
국제구호 활동	0.1	0.1	0.1	4.4	4.6	5.7
농촌지원활동	-	-	-	3.9	3.0	2.3
기타	38.5	31.0	30.5	35.8	43.6	21.7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68,70 재구성.

2) 기부현황

2008년도 188개 기업의 총 기부액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381억 900만원, 기업 당 평균 49억 9,000만원으로 사회공헌 총 지출액에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액의 양적인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총 지출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56.7%, 07년 54.9%, 08년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 기부보다는 직접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인 임직원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확대노력과 맞물려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부분야별로 보면,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에 2008년 43.2%가 지원되었으며, 2006/2007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회복지분야 기부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8년 다시 증가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최대 수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 현상에 대한 기업의 주목 등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학교, 학술연구분야가 매우 중요한 기부분야였으나, 점차 낮아져서 2008년에는 20.6%였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대한 기부비율이 다소 높아졌고, 국제적 재난재해가 많았던 해에 국제구호에 대한 기부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분야별 기부비율 추이

(단위:백만원, 금액기준 %, 중복응답)

분야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도별 총 기부액	686,379	741,086	1,022,430	1,047,832	938,009
사회복지	41.0	37.2	19.6	29.9	43.2
의료보건	2.2	2.1	12.1	9.1	4.3
교육·학교·학술연구	42.6	45.1	34.8	36.4	20.6
문화예술 및 체육	9.1	7.4	13.8	14.9	12.3
환경보전	0.7	1.6	2.7	0.9	1.7
응급 및 재난구호	1.3	1.5	2.3	1.3	0.5
국제구호 활동	0.6	2.3	0.3	0.7	3.2
농촌지원활동	-	-	9.0	0.6	1.5
기타	2.4	2.8	5.3	6.2	12.7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70,73 재구성.

3)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현황

기업과 지역사회 및 봉사처가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임직원 자원봉사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는 직원들의 애사심과 조직몰입, 부서별 의사소통 등 내부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가 높게 인식되고 있다.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08년도 165개 기업들의 기업당 자원봉사 평균건수는 1,615건으로 2004년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봉사자 인당 평균시간 역시 연간 11시간을 보이고 있다.

<표 5>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건수 및 평균시간

(단위 : 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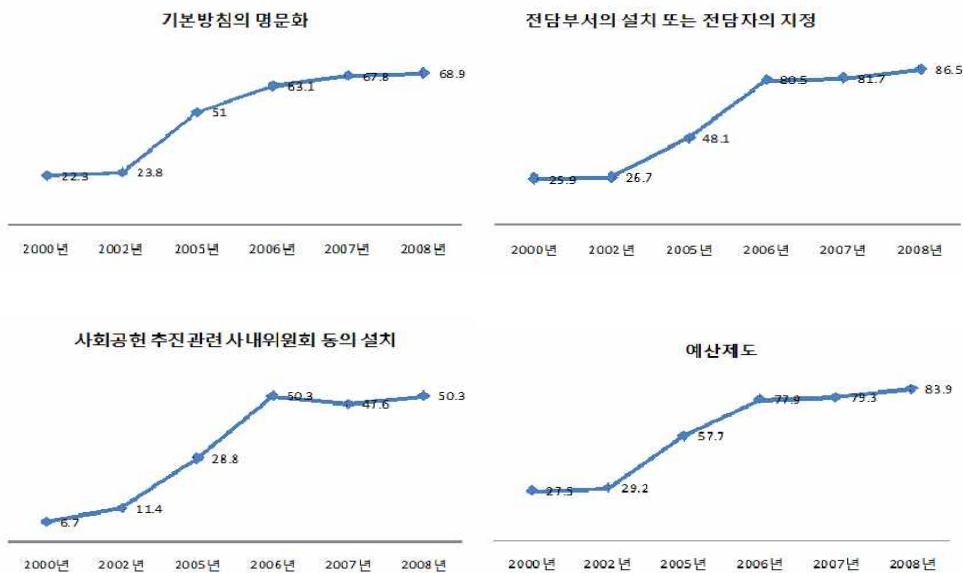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업당 평균건수	572	727	1,097	1,205	1,615
기업별 인당평균시간	3	6	7	11	11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82 재구성.

3) 사회공헌 추진 사내제도 도입현황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기업 내부의 제도로 정착되면서 사내 체제를 정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방침에 사회공헌활동을 명문화한 경우도 2000년 22.3%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69% 가량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2000년 25.9%에서 2008년에는 86.5%로 증가하였다. 사회공헌추진 사내 위원회 설치와 전담자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50%에 달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은 2000년 27.5%에서 2008년 83.9%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내체제 정비비율 추이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78.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내 제도의 정비 뿐 아니라, 전 임직원으로 자원봉사를 확대하면서 자원봉사를 체계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를 갖춘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도 전경련 조사결과 우수 봉사활동자에 대한 표창제도 도입이 59.1%, 봉사활동 휴가제도 도입 51.3%, 사회봉사활동자 등록제도

도입 50.8%, 봉사활동 교육프로그램 48.7% 등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와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사회봉사활동 촉진제도 도입비율 추이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79.

Ⅲ.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특징과 쟁점

1. 특징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특징을 ① 기업 사회공헌의 동기 또는 결정요인의 변화 ② 기업 사회공헌 활동 유형과 규모의 변화 ③ ISO26000 발표 이후의 변화 측면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 사회공헌의 결정요인은 기업이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동기와 사회공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인 변화양상을 보여왔다. 김희성·박기태·이명진(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공헌의 확산과정에서 전기에 해당하는 1992~1997년에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라는 기능적 효과성²⁾에 의한 결정요인이, 중·후기에 해당하는 1998~2006년까지는 제도적 압력의 영향력³⁾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둘째,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유형과 규모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기업 사회공헌의 유형에 있어 초기에는 기업최고경영자 내지 기업의 재산출연에 의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추진되었으며(문순영,2001:15, 이상민,2002:89, 정진경,2005:182), 이후 기업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과 직접연계시키는 공익연계마케팅의 방식이 시도되었고, 기업 사회공헌이 기업내부의 제도적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내 사회공헌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직접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기업관련 특정분야 지원 등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정진경,2005:182).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2000년 중후반 이후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모방적 압력(김희성·박기태·이명진,2009)과 기업간 또는 담당직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형화(isomorphism) 경향을 보이고 있다(정진경, 2005:196). 기업 사회공헌의 동형화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사적 강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중심적 지원, 그리고 기업의 특징에 맞는 차별적인 전략적 사회공헌 집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들이 사회공헌예산에 지출하는 집행액 또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005년 국제표준기구의 ISO26000 논의 이후 공식적 지침서가 발행된 201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은 사회공헌보다 한차원 더 뛰어넘는 국제적 표준 CSR 에 대응하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각 기업들(88개 응답기업)은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05. 50%→09.92%)과 윤리현장제정(05.80%→09.95%),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64%), CSR 전담부서의 운영(05. 31%→09.70%)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 기업의 이미지 관리는 기업사회공헌 결정요인 중 내부적 요인을 의미하며, 명성·신용 등 기업의 무형적 가치와 손상된 이미지 회복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기업사회공헌 수행

3) 기업사회공헌의 결정요인이 국제규범으로서 초국적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외부적 압력이 기업 내부에 제도화되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제도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조직규범의 적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적 시각.

2. 쟁점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위계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영역은 기업 본연의 경제적 책임, 법적 및 윤리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이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 즉 고용과 경제발전 중심에서 이를 뛰어 넘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강조되어왔다. 경제적 책임에 대응하는 자선적 책임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강조는 기업의 법적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가리게 되는 기제로 작용될 수도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제기되어왔다. 또한 반대로 사회공헌활동에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투여했어도 법적 및 윤리적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기업이미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자금 조성, 정치자금 제공, 법정 근로시간 초과, 종업원 복지 미흡, 불법 증여와 상속을 통한 가족경영 유지, 주가조작, 산업복지 부재 등의 상황에서 기업의 외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모순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경험으로 보아서 보다 더 근본적인 기업의 법적 및 윤리적 경영이 투명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동기와 활동분야 및 성과의 측정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동기를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또 그 동기를 누구의 입장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영역 및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 중심의 접근으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재무적 성과, 기업이미지,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와 관련된 것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중심에서의 성과측정은 소비자나 지역사회 비영리기관과 사회공헌지원분야 관계자들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지나친 기업 사회공헌의 기업경영적 성과를 들어내는 것은 파트너들로 하여금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오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 결과 역시 매우 혼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한준, 2007; 박종철, 2009).

또다른 측면은 과연 기업 사회공헌이 직접적으로 재무적 및 제품적 성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 사회공헌의 종업원에 대한 성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이며 간접적인 성과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직접적 단기적 재무적, 제품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외부요인에 대한 간과와 기업사회공헌을 왜곡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공헌활동이 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기업과 사회공헌 분야의 적합성과 부합성 등을 다루는 등 사회공헌의 전략성도 강조하고 있다(김주란·황장선, 2008).

반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지원하고 직접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분야에서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정진경·조상미·황정은,2008). 사회복지분야와 사회복지조직에게 기업 사회공헌은 매우 중요한 민간자원임에 틀림없으나, 이것이 해당분야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분야에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외부 환경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어 시장의 공적기능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의 소비가 가능한가?에 대한 쟁점이다. 제품 품질, 가격, 소비자 만족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책임이 우수한 기업 제품의 선택에서 소비자는 어떠한 점을 더 우선시 할 것인가? 소비자는 제품 구매나 기업 평가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교화(박종철, 2009)가 어느정도 가능한가?

관련하여, 점차 소비자 의식 및 시민 의식의 성장은 앞으로 사회적 책임적 소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전경련, 2009) 결과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2.2%, 제품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사회공헌활동 이행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공공성 확대는 정부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가능한가? 자칫 기업에 대한 규제로서 압력의 가능성은 없는가?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기업으로써 당연한 책임으로만 인식하는가? 여전히 기업 사회공헌의 진정성만 의심하고 있는가? 기업과 비영리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win-win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 ISO26000이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미칠 영향

2010년 11월 5년여간의 논의 끝에 국제표준기구에서 발간된 ISO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는 현재로서는 인증제도가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은 7개 영역에 대한 책임이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미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이래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뿐 아니라 윤리경영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 및 소비자들의 인권과 노동관행, 공정운영 등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근간으로 해야 할 분야가 지금까지 일종의 관행으로 간과된 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는 생각이다. 서둘러 CSR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기업의 제도화 노력 속에서 전략적 기부와 임직원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위축될 것인지 혹은 10여년 안팎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화로 자리잡을 것인지

지에 대한 흐름의 변화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진·김종근.2010.“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차원별 파급효과와 메시지 유형을 중심으로”한국마케팅저널 11(4):49-67.
- 김주란·황장선.2008.“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전략 및 메시지 전략, 크리에이티브 전략 분석;100대 기업 CSR 웹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2(3):76-90.
- 김희성·박기태·이명진.2009.“기업 사회공헌 결정요인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1990년대 초반 이후 기업의 기부금 규모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43(4):1-36.
- 박종철.2009.“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합성 효과”한국비즈니스리뷰 2(3):85-99.
- 선혜진.2004.“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 PR의 고찰: 기업재단을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 110-208.
- 양세영.2010.“ISO26000의 의의와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자료집”전국경제인연합회. 2010.9.28.
- 이상민.2002.“기업의 사회적 책임 : 미국과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비교”한국사회학 36(2):77-111.
- 이한준.2007.“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동기추론이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한국비영리연구 6(2):285-310.
- 전국경제인연합회.2009.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 전국경제인연합회.2009.“국내외 CSR 추진조직 운영현황과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2009. "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실태 조사결과".FRP 통권 152호.
- 전국경제인연합회.2009.“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 정진경.2005.“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주요사례 분석”.한국비영리연구 4(1):177-207.
- 정진경·조상미·황정은.2008.“기업 및 비영리조직의 시각에서 경험한 기업자원봉사활동의 혜택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2):203-245.
- 조대엽.2007.“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한국사회학 41(2):1-26.
- Blindheim,B.T.,& Langhell,O.2010."A re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s of CSR: A pragmatic approac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7:107-117.
- Cary Parsons.2004."Linking Companies and Communities",Business Week Online,12/12.
- 전경련 홈페이지 : www.fki.or.kr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강 성 호(국민연금연구원)**

I.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제도 도입 후 11년 만인 1999년에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짧은 시간에 걸쳐 외형적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 제도 내실화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역가입자의 절반이상은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고, 장기체납자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아 지역가입자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정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부예외 및 체납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에 도달한 후에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노후소득 수준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소득보장의 불충분 및 소득분배 구조의 역진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2004년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수행된 바 있으나 큰 진전은 없었고, 최근 연금공단 및 복지부에서는 가입구조 개편을 통해 여성연금 수급권 확대 및 사각지대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를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로 판단하느냐, 급여수준의 적정성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연금'의 사각지대와 '저연금'의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상소득원의 범위에 따라 연금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모든 공적이전소득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對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강성호 외, 2008).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점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현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미래노인계층(현 근로세대)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사각지대를 구분해 볼 수 있다(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 2004).

혹자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논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전체인양 확대 해석하여 평가하거나, 혹은 아직 성숙단계도 거치지 않은 초기단계의 국민연금제도 현상(낮은 급여수급권 획득과 낮은 급여수준)을 마치 국민연금제도의 전체인양 해석하여, 실질적인 제도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이미 30~40년을 넘어 성숙기에 달하고, 특수직역종사자 특성상 사각지대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제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겠다. 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직업 유형을 획일적인 체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제도 정착과정에서 사각지대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시점으로 본다면 22년으로 이제 청년기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기 관점에 맞는 제도 평가가 필요한데, 혹자들은 아직 성숙기에 도래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를 성숙기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대 혹은 과소평가의 우려도 있다. 즉, 연금수급권 획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가입기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제도초기에 이미 중령층(예, 4, 50대) 가입자의 경우 제도 허용 최대가입기간이 1, 20년정도여서 수급권 획득 및 급여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어 제도 초기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평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국민연금 사각지대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나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고, 현 시점의 노인계층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미래의 노인(현재의 가입자)계층에 대한 분석이나에 대해 분명히 하여 연구할 때만이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 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각지대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각지대 중에서 수급권 획득 여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⁴⁾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당수의 기존연구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민연금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이전소득 변수에 통합되어 소득원을 분리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연금은 생애기간동안 가입이력을 통해 연금수급여부가 획득되므로 특정시점이 아닌 생애기간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하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가입시점에서의 납부예외 등 가입시점에서의 정보로만 사각지대(적용의 사각지대)를 판단하고 있어 대부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생애기간을 걸쳐 분석함에 있어 미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실태를 통해 현 가입자들의 가입행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은퇴시점의 수급여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제3장에서는 생애기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고 미래 연금성숙기 시점에서의 국민연금 수급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갈수록 노인빈곤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게 되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대안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를 노후소득보장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초점은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여부에 맞추고 있으므로 제목은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으로 정하였음.

II. 지역가입자의 현황 및 추이

1. 지역가입자 일반현황 및 추이: 대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가입 및 소득수준 비교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향후 연금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1988년 제도도입 당시 443만명에서, 전국민연금화가 달성되는 1999년 4월에 1,627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8월 1,906만명으로 확대되었다. 현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5~59세 경제활동 인구 2,201만명(2010⁵⁾의 86.6% 수준이며, 나머지 13.4%는 경제활동 인구가지만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되고 있다. 경활사이면서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특수지역연금가입자, 수급자⁶⁾, 공공부조 대상자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지역가입자는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가입자 약 2백만명을 시작으로 전국민연금화가 실현되는 1999년 4월에 급격히 증가하여 1천 1백만명이 되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장확대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하게 나타나, 2007년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업장 가입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각지대 축소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⁷⁾

그러나, 1999년 전국민연금화를 전후하여 소득과약이 되지 않는 농어민, 자영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의 획일적인 편입은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들 문제의 장기화는 장래 노후소득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표 1>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천개소, 천명)

구분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소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12	4,432	58	4,431	-	-	-	1.3	0.3
'95.12	7,496	152	5,541	1,890		1,890	48	15
'99.04	16,268	174	4,992	11,113	9,045	2,067	34	128
'99.12	16,261	186	5,238	10,822	8,739	2,083	32	168
'03.12	17,181	423	6,958	9,964	7,902	2,062	23	234
'05.12	17,124	646	7,950	9,123	7,154	1,969	26	23
'07.12	18,266	856	9,149	9,063	1,976	7,086	27	27
'08.12	18,335	922	9,493	8,781	1,941	6,841	28	33
'09.12	18,624	980	9,867	8,680	1,925	6,755	36	41
'10.08	19,060	1,016	10,238	8,709	1,950	6,759	65	47

5)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에서 정리하였으며, 경활인구전체(2,500만명) 대비 가입자 비율은 76.2%임

6) 경제활동인구 통계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관계없이 경제활동 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연금수급자인 경우도 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음.

7) 김성숙·강성호(2005)에 의하면, 1단계('03.7~)결과 232천명, 2단계('04.7~)결과 221천명, 3단계('06.01~) 결과 103천명으로 1~3단계를 거쳐 총 556천명이 사업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

주: 천개소, 천명이하 절사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0.10(내부자료).

물론 지역가입자의 존재 자체가 제도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납부예외와 체납상태의 장기 지속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즉, 일시적인 납부예외와 체납상태 때문이 아니라 동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등 경제적 격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8월 기준 전체 평균소득월액은 181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장과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07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09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 대비 52.6%수준이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사업장대비 지역의 평균소득월액 비율은 2000년말 62.3%수준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8월 현재 52.6%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의 상대적 감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⁸⁾과 실제소득이 아니라 신고소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소득과약의 문제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도시대비 농어촌지역의 평균소득월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기간 동안 도시와 농어촌의 국민연금 적용소득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차이의 심화는 현행 제도와 같이 기여에 비례한 급여구조 하에서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을 암시하고,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저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표 2> 연도별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구분	총평균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도시	농어촌
'95.12		943	1,052	577 (54.8)	-	577 -
'99.04		1,095	1,439	785 (54.6)	841	628 (74.7)*
'00.12		1,191	1,476	920 (62.3)	981	724 (73.8)*
'01.12		1,290	1,607	960 (59.7)	1,018	773 (75.9)*
'02.12		1,362	1,685	1,010 (59.9)	1,059	844 (79.7)*
'03.12		1,454	1,769	1,050 (59.4)	1,091	914 (83.8)*
'04.12		1,525	1,816	1,058 (58.3)	1,095	947 (86.5)*
'05.12		1,586	1,875	1,074 (57.3)	1,109	972 (87.6)*
'06.12		1,632	1,904	1,068 (56.1)	1,102	972 (88.2)*
'07.12		1,690	1,956	1,076 (55.0)	1,107	987 (89.2)*
'08.12		1,751	2,012	1,089 (54.1)	1,119	1,003 (89.6)*
'09.12		1,777	2,024	1,104 (54.5)	1,133	1,023 (90.3)*
'10.08		1,813	2,065	1,087 (52.6)	1,113	1,012 (90.9)*

주: 1) 천원이하 절사, 2) ()안은 사업장 대비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비율, 3) ()*안은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비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0.10(내부자료).

한편, <표 3>과 같이 소득구간을 5개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입유형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가입자 전

8) 백화중·강성호(2008) 참조

체기준으로 월 385천원 미만 가입자 비율은 0.7%수준으로 가장 낮았으며, 월 885천원~1,710천원미만의 가입자 비율은 4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710~2,870천원 미만(20.4%), 2,870천원이상(20.7%), 385~885천원미만(17.7%) 구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입유형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가입유형 모두 885~1,710천원미만 소득구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1,710천원~2,870천원미만의 중위 소득구간과 2,870이상의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52.9%로 나타난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385~885미만의 저소득 구간이 39.2%로 나타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저소득구간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업장가입자는 고소득층이,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이 많은 형태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수급권획득 가능성이 낮고, 수급하더라도 연금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2010년 8월기준)

(단위 : 천원, 천명, %)

소득구간(천원)	총계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계	13,896	100.0	10,238	100.0	3,545	100.0	113	100.0
385미만	98	0.7	69	0.7	26	0.7	3	2.6
385~885미만	2,362	17.0	953	9.3	1,390	39.2	18	15.9
885~1,710미만	5,732	41.2	3,805	37.2	1,846	52.1	82	72.3
1,710~2,870미만	2,835	20.4	2,630	25.7	199	5.6	6	5.4
2,870이상	2,870	20.7	2,781	27.2	84	2.4	4	3.7

주: 1)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를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0.10(내부자료).

2. 납부예외자, 체납자 현황 및 추이

납부예외자는 2010년 8월 기준으로 516만명 수준이며, 이는 전체 가입자의 27.1%(지역가입자의 59.3%)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발생한 이래 납부예외 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전국민연금화가 시작된 1999년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전 연령계층에서 높은 납부예외율을 보이다가 전가입자 기준으로 20~40%범위에서 납부예외율이 개선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2003년 이후 추진된 사업장 확대사업은 기존 지역가입자 중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주 등 소득과악이 어려운 자들만 지역가입자로 남게 되거나, 신규 가입하더라도 여성 취업,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납부예외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연도별 지역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납부예외율	도시		농어촌	
			인원	납부예외율	인원	납부예외율
1999.12	5,512	50.9	4,824	55.2	687	33.0
2000.12	4,446	42.7	3,843	45.9	603	29.6
2002.12	4,250	42.5	3,560	44.5	689	34.4
2004.12	4,683	49.8	3,851	52.0	831	41.4
2006.12	4,936	54.3	4,025	56.6	911	46.2
2008.12	5,026	57.2	4,052	59.2	974	50.2
2009.12	5,052	58.2	4,063	60.1	989	51.0
2010. 8	5,164	59.3	4,134	61.2	1,030	52.8

주: 1) 지역별 납부예외율은 각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예외자 수로 계산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각년도월별(내부자료).

납부예외율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 30대에서 가장 높고, 40대로 오면서 감소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납부예외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연령계층은 다른 연령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어, 수급대상에 근접할수록 납부예외 현상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급여시점에 다가올수록 납부 사각지대는 줄어들게 되고⁹⁾, 결과적으로 연금사각지대가 낮아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 지역가입자 연도별 연령별 납부예외자 비중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총계	4,634	(100.0)	4,936	(100.0)	5,107	(100.0)	5,026	(100.0)	5,052	(100.0)	5,164	(100.0)
18~19세	14	(0.3)	21	(0.4)	23	(0.5)	23	(0.5)	18	(0.4)	22	(0.4)
20~24세	346	(7.5)	362	(7.3)	370	(7.2)	394	(7.8)	393	(7.8)	384	(7.4)
25~29세	775	(16.7)	852	(17.3)	897	(17.6)	887	(17.7)	896	(17.7)	891	(17.3)
30~34세	769	(16.6)	783	(15.9)	794	(15.5)	754	(15.0)	799	(15.8)	831	(16.1)
35~39세	707	(15.2)	761	(15.4)	788	(15.4)	773	(15.4)	734	(14.5)	715	(13.8)
40~44세	625	(13.5)	637	(12.9)	642	(12.6)	638	(12.7)	648	(12.8)	672	(13.0)
45~49세	594	(12.8)	643	(13.0)	667	(13.1)	634	(12.6)	619	(12.3)	624	(12.1)
50~54세	440	(9.5)	494	(10.0)	526	(10.3)	533	(10.6)	551	(10.9)	585	(11.3)
55~59세	363	(7.8)	383	(7.8)	398	(7.8)	390	(7.8)	394	(7.8)	439	(8.5)
60세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주: 비중은 해당연령구간 납부예외자 수/해당 연령구간 전체 가입자수×100으로 산출

납부예외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실직 휴직 사업중단(2010.8월 기준 85.7%) 등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실직 휴직 사업중단의 경우가 7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일반적으로 50대에서 추후납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납부예외 사유(2010년 8월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계	실직	휴직	사업 중단	3월이상 입원	자연 재해	기초생활 곤란등	교도소수 감등	주소 불명
계 (%)	5,164,209 (100.0)	3,916,016 (75.8)	82,401 (1.6)	428,832 (8.3)	7,697 (0.1)	488 (0.0)	316,110 (6.1)	8,332 (0.2)	38,285 (0.7)

주: 1) 자연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기초생활곤란 등 :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재학 등 : 재학, 병역의무, 27세 미만인 자 중 납부이력보유자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0년 10월(내부자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납부예외자 총수치의 변화는 없으나 실제로는 납부예외자와 소득신고자 사이에는 부단한 자격변동으로 활발한 자격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부예외자의 가입지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납부예외자 중 연간 23.3%(2008년 기준)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납부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 시점에서의 납부예외자가 연금 사각지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표 7>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및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현황

(단위 : 천명, %)

연도	지역 납부재개		사업장 전환		납부재개 전체	납부예외자 대비 비율
1999년	279	(36.4)	488	(63.6)	767	13.9
2000년	1,520	(71.9)	625	(29.5)	2,115	47.6
2001년	676	(57.4)	502	(42.6)	1,178	26.3
2002년	875	(61.0)	559	(39.0)	1,434	33.7
2003년	723	(52.4)	655	(47.6)	1,378	28.6
2004년	504	(39.6)	768	(60.4)	1,272	27.2
2005년	387	(33.0)	785	(67.0)	1,171	25.3
2006년	332	(29.5)	794	(70.5)	1,125	22.8
2007년	351	(26.0)	1,000	(74.0)	1,351	26.4
2008년	246	(20.9)	927	(79.1)	1,173	23.3

주: ()안은 납부재개자 전체 대비 비율

자료: 사각지대 해소대책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자료, 2004(1999~2003년); 공단 내부자료(가입자지원실, 2004~2008년).

납부예외자도 소득신고자에 비해 보험료 납부이력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납부이력이 있다. 즉, 납부이력이 존재하는 납부예외자 수는 '09년 전체 납부예외자의 69.9% 수준, 이들은 향후 상담 설득에 의해 소득신고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720천명의 납부예외자는 연금수급권 취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납부예외자 중 납부경험자 비중 연도별로 보면, 2004년 56.7%, 2005년 56.2%, 2006년 58.6%, 2007년 60.5%, 2009년 69.1%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이력 경험비율이 체증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5년 이상의 상대적으로 많은 납부이력이 있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특정 시점의 납부예외 상태가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된 집단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납부와 미납이 반복되는 과정의 일부로 보아 이들 모두를 연금사각지대로 판단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납부예외자의 연도별 납부이력 현황('07. 12월)

(단위 : 천명, %)

납부기간 연도	계 (A)	없음	납부기간							
			소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인원 (B)	비율 (B/A)						
'09.12	5,052	1,520	3,532	69.9	1,339 (37.9)	578 (16.4)	389 (11.0)	505 (14.3)	508 (14.4)	212 (6.0)
'07.12	5,107	2,015	3,091	60.5	1,225	522	341	448	405	151
'06.12.	4,936	2,045	2,891	58.6	1,146	495	319	424	367	140
'05.12.	4,634	2,029	2,605	56.2	1,024	452	296	398	312	123
'04.12.	4,683	2,027	2,656	56.7	1,051	456	300	411	308	130

자료: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09년자료는 김경아(2010) 참조.

한편, 소득신고자의 경우도 납부예외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입자의 경제 상황이 동태적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추정은 특정시점만을 대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즉,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모두가 국민연금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자체에서의 적용제외, 제도외적 요인(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로 및 가입이력 등을 추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9>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률

(단위 : 천명)

연령	경제활동인구 (A)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국민연금가입자 수(B)		국민연금가입률 (C=B/A×10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19세	95	139	1,526	1,356	6.0	9.3	25	41	26.74	29.6
20-24세	592	958	612	700	49.2	57.8	433	652	73.15	68.0
25-29세	1,524	1,279	436	632	77.8	66.9	1,385	1,090	90.9	85.2
30-34세	1,935	1,049	148	940	92.9	52.7	1,797	865	92.9	82.5
35-39세	2,063	1,243	114	876	94.7	58.7	1,931	825	93.6	66.4
40-44세	1,982	1,336	118	703	94.4	65.5	1,760	789	88.8	59.1
45-49세	1,921	1,296	141	756	93.2	63.2	1,713	836	89.2	64.5
50-54세	1,455	930	157	681	90.3	57.7	1,220	634	83.9	68.1
55-59세	958	601	245	616	79.6	49.4	902	543	94.2	90.3

지역가입자의 누적 징수율은 <표 10>과 같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입종별로 볼 때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누적징수율은 월수기준(건수)으로는 약 8%p정도 낮은 89.4%로 나타났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약 16.6%p정도 낮은 82.6% 수준으로 나타났다(2010.8월 기준).

<표 10> 연도별 종별 누적징수율 현황

(단위 : %)

구분 연도별	사업장		지역가입자					
			소계		도시		농어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5.12	98.3	99.3	67.3	66.7	-	-	67.3	66.7
'99.12	98.0	99.1	75.3	73.5	77.9	78.5	74.3	70.3
'00.12	98.1	99.2	76.5	74.3	77.3	76.5	75.8	71.1
'05.12	97.0	99.1	84.6	75.7	82.3	75.2	88.6	77.1
'06.12	97.0	99.1	85.6	76.7	84.0	76.8	88.6	76.3
'08.12	97.4	99.2	89.4	82.6	88.1	82.6	91.7	82.6
'10.08	97.9	99.3	91.6	86.6	90.7	86.6	93.4	86.8

주: 징수율은 납부기한(매익월 10일) 기준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누적징수율로만 보면, 소멸시효로 징수권이 사라진 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미납기간 분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납기간별로 살펴보면, 2년 이상의 장기 체납자 비율이 전체의 59.9%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액미납과 일부미납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전액미납자 중 2년 이상 장기체납의 비율이 65.5%로 일부미납 55.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입자 대비 비율로 보면, 2008년 6월 기준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 대비 2년 이상 장기체납자 비율은 6.8%(14.0%)로 계산된다. 이러한 장기 체납은 납부예외와 달리 추후납 형태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1> 지역가입자 미납기간별 현황(2010년 8월)

(단위 : 천명)

기간별	전체		전액미납		일부미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686	100.0	680	100.0	1,006	100.0
4-6개월	150	8.9	46	6.8	104	10.3
7-12개월	225	13.3	78	11.5	147	14.6
13-24개월	307	18.2	105	15.4	202	20.1
25개월이상	1,004	59.5	451	66.3	553	54.9

주: 3개월 이하 미납자는 일시착오 또는 신규취득 안내 필요 자료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III.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추정

1. 횡단면 기법에 의한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 추정

공식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시점(2009년 6월 기준)에서의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는 다음과 같이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와 관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배제현황 추출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한 통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공식적 자료로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자료의 접근용이성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 분석법은 특정시점에서 경제적 지위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애이력을 고려하여 추정되어야 하는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 규모는 다소 과대추정될 여지가 있다.

본 추정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가능인구¹⁰⁾를 출발점으로 하여 경활자와 비경활자로 구분하고, 경활자는 다시 취업 및 비취업(불완전 취업포함)으로 구분하게 된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는 국민연금 적용대상과 특수직역 적용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은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소득신고자는 다시 보험료 납부자와 미납자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제도는 경활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연령 및 성별 기준이 우선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¹¹⁾ 그러나, 내용 이해와 단순화하여 접근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법이기도 하다. 이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2009년 6월기준 34,881천명이고, 이를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인 18~59세로 한정하면 30,789천명이 분석대상이 된다. 이들 중 29.1%(8,946천명)는 비경활자, 나머지 70.9%(21,843천명)는 경활자로 분류된다. 다시 경활자 중 1,994천명은 불완전 취업자 및 적용제외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면, 취업자 19,849천명이 국민연금 실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중 납부예외자 5,026천명이 배제되면, 소득신고자 13,446천명이 납부대상자가 되고, 다시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 2,265천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는 11,181천명이 되어 18~59세 총인구 중 11,181천명이 국민연금 납부자로 추정된다. 여기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 1,377천명을 포함하면 18~59세 총인구 중 40.8%가 특정시점(2009년 6월 기준)에서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횡단면 기준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는 18~59세 총인구 중 59.2%(18,231천명) 수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동 산출결과는 편의상 현 시점에서의 근로상태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고, 또한 비경활인구의 대부분과 경활자 중 협업배우자(무소득배우자)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비해당자이므로 이를 배제하지 않고 총 인구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사각지대 규모가 다소 과대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생애기간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하는 것

10) 생산가능인구 : 조사 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제외됨 (2008 KLI노동통계, 2008).

11) 즉,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부부 모두 비경활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을 납부예외로 등록)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다소 복잡한 관계식이 형성된다.

이 옳다고 하겠으며, 여기서는 설명의 간결화와 편의상 특정시점 기준으로 연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추정하는 것이다.

<표 12>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2009.06)

18~59세 총인구 30,789천명 ¹⁾ (100%)					
경제활동인구 21,843천명					
취업자 ²⁾ 19,849천명					
비경제활동인구 8,946천명	불완전 취업자 및 적용제외 ³⁾ 1,994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8,472천명			특수지역 연금 ⁶⁾ 1377천명
		납부예외자 5,026천명	소득신고자 13,446천명		
			미납자 ⁴⁾ 2,265천명	보험료 납부자 ⁵⁾ 11,181천명	
29.1%	6.5%	16.3%	7.3%	36.3%	4.5%
적용의 사각지대 ⁷⁾ 18,231천명 (59.2%)				잠재적 수급권자 12,558천명 (40.8%)	

- 주 : 1) 통계청 5세단위 연령통계 기준으로 작성(단, 18, 19세 인구수는 15~19세 인원수의 40%를 적용)
 2) 공적연금 가입대상일 경우 취업자(=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적용대상)로 정의하고, 이외의 자는 불완전 취업자 및 적용제외자로 정의함
 3) '불완전 취업자 및 적용제외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에는 통계청 발표 18~59세 실업자(879천명)가 포함되었음.
 4) '미납자'는 2010년 1월 수납기준이며 60세 이상 미납자 인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5) '보험료 납부자'는 '소득신고자-미납자'로 정의하여 산출하였음.
 6)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군인, 사학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2009.12월 기준 1,047,897명, 군인은 2007년 연보기준 수급자는 68,044명이나 가입자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사학연금 가입자수는 2009.06월 기준 261,144명임. 이를 합하면, 약 1,377천명(4.5%)으로 추정
 7)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것은 2009.06월 기준임.

2. 국민연금 수급자 장기전망과 외국의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 비교

미래의 연금수급 및 수급액 수준과 관련하여 공식적 자료로는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시에 운영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가 산출한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개인기여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2030년 39.7%, 2040년 52.1%, 2050년 63.1%, 2060년 69.3%이다가 207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인의 70%이상이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파생적 수급권인 유족연금을 포함할 경우 2070년 이후 90%이상이 수급권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상 연금수급 및 보편성은 자신의 기여에 의한 연금의 수급율로 측정하는 것이 현재의 적용사각지대를 더 잘 반영한다(이용하, 2010)는 점에서 개별적 연금수급권 중심으로 해외사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65세 이상) : 기본 인구가정

(단위 : 천명, %)

	수급자 수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8	969	7	105	19.3	0.1	2.1
2010	1,214	10	153	22.7	0.2	2.9
2020	2,285	36	568	29.7	0.5	7.4
2030	4,687	81	1,213	39.7	0.7	10.3
2040	7,842	113	1,909	52.1	0.8	12.7
2050	10,196	120	2,428	63.1	0.7	15.0
2060	10,489	108	2,433	69.3	0.7	16.1
2070	9,624	92	2,169	72.6	0.7	16.4
2078	8,231	78	1,940	73.1	0.7	17.2

자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 2008.5.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도입 40년, 전국민연금 시행 40년을 맞이하는 2030~40년경에도 노령연금 수급률이 40~50%(장애유족 포함시 50~65%) 수준에 불과하여, 연금제도 성숙기로 가정하고 있는 도입 이후 40년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노인이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여 노인빈곤화의 우려가 있다. Scruggs(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퇴직연령 이후 인구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비중이 1960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2030~40년경의 공적연금 수급수준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각 국가마다 제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라는 한계는 있다.

<표 14>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의 노령연금수급률* 추이

(단위: %)

관찰연도 국가	1960	2000	관찰연도 국가	1960	2000
호주*	52	68	일본	32	127
오스트리아	59	87	네덜란드	80	107
벨기에	-	101	노르웨이	88	102
캐나다	99	97	뉴질랜드	71	95
덴마크	82	101	스웨덴	100	100
핀란드	97	100	스위스	100	100
프랑스	-	100	영국	79	104
독일	-	100	미국	72	93
아이슬란드	87	96	이태리	-	100

주: 1) 노령연금수급률(take-up rate) : 퇴직연령 이후 인구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2) *호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나 소득 및 자산조사로 인해 노인의 약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Scruggs(2007). p 153 ; 이용하(2010) 재인용.

<표 15> 공적연금적용율의 국제비교(OECD 국가)

(단위: %)

국가	연도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동가능연령 인구 대비	한국	연도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동가능연령 인구 대비
호주	2004	80.8	58.8	한국	2004	58.8	39.9
벨기에	1995	86.2	65.9	멕시코	2002	34.6	22.6
캐나다	1992	91.9	80.2	네덜란드	2002	94.0	72.0
체코	2003	86.0	61.0	노르웨이	2003	92.0	75.0
덴마크	2003	92.0	74.0	폴란드	2005	84.8	54.5
핀란드	2003	90.3	67.0	포르투갈	2003	92.0	71.0
프랑스	2003	90.0	62.0	슬로바키아	2003	58.8	55.0
독일	2003	88.0	64.0	스페인	2003	92.0	63.0
그리스	2002	79.0	52.0	스웨덴	2003	90.0	72.0
헝가리	1996	77.0	65.0	스위스	2003	99.0	84.0
아이슬란드	1993	92.0	91.0	터키	2002	44.9	24.3
아일랜드	2002	93.0	64.7	영국	2003	94.0	73.0
이태리	2003	90.0	56.0	미국	2003	91.0	71.0
일본	2003	94.0	73.0	OECD 평균	-	83.6	63.4

주: 1) 각국의 기여방식 연금제도만 고려(조세방식의 보편적 연금 등은 제외)

2)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납부자란 국민연금의 소득신고자+특수직역연금가입자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이용하(2010) 재인용.

이러한 현상을 현재의 공적연금 적용율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표 15>에서와 같이 OECD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보험료납부자 비중을 보면, 외국의 경우 그 비중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58.8%로, 국민연금의 높은 납부예외율 등으로 인해 OECD 평균(83.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의 제도적 특성에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은 고정적인 수입(연금)이 적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3. 생애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기간의 가입이력을 산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급여의 획득여부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의 분석보다 사각지대 정의에 보다 부합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서의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는 납부시점에서의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지만, 생애기간 동안을 고려한다면 이들 모두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납부시점이 아닌 급여시점에서의 수급권 획득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부사각지대가 되더라도 모두가 급여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생애기간동안 근로가능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할 때 납부 사각지대로 30년이상 머물지 않으면 급여사각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사각지대는 납부사각지대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동안 급여사각지대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일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산자료를 활용하

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생애소득산출과 생애연금액 산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였다.

가.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1) 분석가정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생애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급여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사용하였다.¹²⁾

첫째, 분석 대상은 노동패널(Klips) 1~11차년도(1998년~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현시점(2008년)에서 근로세대(27~59세)¹³⁾에 해당되는 개인으로 한다. 즉, 국민연금에서 고려하고 있는 본격적인 소득활동 시작시기인 27세 이상¹⁴⁾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60세 직전 연령인 59세까지만 분석대상으로 한다. 60세 이후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동 연령층의 경우 이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노령층이어서 충분한 가입기간 미확보로 수급권 획득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제도적 평가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의 생애 인적정보 및 근로이력 정보는 기본적으로 노동패널(Klips) 1~11차년도(1998년~2008년)에서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인적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패널과 통계청 자료간 연령구성별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데(부표 5 참조), 공식적인 자료와 맞추기 위해 노동패널 가중치 조정하여, 통계청 연령구성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근로이력정보와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득과약의 미비로 모든 경제활동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납부예외나 체납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체납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커지 않아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납부예외 비율은 상당하므로 경제활동 인구 중 납부예외자 비중을 반영하여 추계에 활용하였다(부표 6, 7 참조).

셋째,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점은 개인별로 차별화하여 60~65세로 가정한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 마다 1세씩 연장되며, 2033년 이후에는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급이 종료되는 사망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통계청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사용한다. 한편, 출산율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 기준 27~59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배우자 존재여부는 연령대별로 상이하므로 2008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배우자 비율¹⁵⁾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넷째,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부양가족연금, 유족 장애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시금 수급자는 10년 미만 가입자로 정의하였으며, 이들은 국민연금사각지대 대상자가 된다.

다섯째,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은 현행 국민연금법에서의 허용수준을 적용한다. 2009년 이후 보험료를

12)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들은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2008)에서 제시한 가정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동 연구는 사각지대 규모 추정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와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분석결과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자료구축에 활용한 가정을 원용하였다.

13) 앞의 분석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령은 27세 이상이며, 59세까지 보험료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14) 현행 국민연금법 제6조는 18~59세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27세 미만 자 중에서 근로 이력이 없는 사람은 적용제외자로 관리되고 있으므로(법 9조 3항) 27세 이상 60세 미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5) 노동패널 2008년 기준 30세이하 유배우자비율은 25.5%, 30대 71.8%, 40대 82.1%, 50대 76.8%, 60대 68.5%, 70세이상 50.9%로 나타났다.

은 현행과 동일하게 9%를 적용하고,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1999년~2007년까지는 60%, 2008년에는 50%, 2009년 이후는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4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

여섯째, 현행 기준소득월액¹⁶⁾의 등급체계는 2010년 이후는 상·하한선만 유지되고 등급체계가 없는 기준소득월액 체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은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으며, 2010년 7월 이후 시행령¹⁷⁾ 기준에 의거하여 A값 변동률에 따라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곱째, 연금 수령기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2~3%수준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덟째, 할인율은 미래의 현재가치를 매우 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분석결과는 2008년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분석에 활용한 자료(제11차 노동패널자료)의 최종시점이 2008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본 논문에서는 생애보험료, 생애연금액, 일시금, 생애소득을 산출하고 국민연금수급권 획득 여부에 따른 사각지대추정 및 성숙단계별 사각지대 변화효과를 분석한다.

2) 분석방법 : 생애근로소득 및 연금사각지대 추정

국민연금제도는 납부시기와 급여시기로 분리되어 의무(부담)와 권리(연금수급권)가 동일시점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나 건강보험제도와 구분된다. 따라서, 두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야 제도의 사각지대를 포함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납부시점에서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시점이므로 제도에 대한 불만이 수급시점보다 높고, 동 시기만 고려하여 분석하게 되면 제도수용성은 평가절하될 수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납부예외자와 체납자에 대한 분석은 납부시기만을 고려하고 수급조건이 근로가능기간 중 10년이상 가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를 과대추정할 여지가 있다.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은 미래의 근로소득(추정소득)¹⁸⁾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액을 산출하고, 이러한 보험료 납부이력을 바탕으로 연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¹⁹⁾. 여기서 생애소득이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차감한 뒤, 은퇴 이후에 받는 연금급여 총액(=생애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식 (4)참조)²⁰⁾ 즉, '생애소득 = 생애근로소득 - 생애보험료 + 생애연금'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의 생애근로소득 추정모형은 2007년 7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을 반영하고, 김상호(2007), 강성호·전승훈·임병인(2008)에서 활용한 생애소득 추정모형을 참고한 것이다. 생애기간 동안의 개인 근로소득은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생애근

16) 2007년 7월 법개정시 표준소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용어 변경

17)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A값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8) 국민연금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근로 혹은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한다.

19) 산출과정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은 강성호·김철주·최은아(2007)의 방법과 유사하다.

20) 1999년부터 은퇴시기(60세) 직전까지의 자신의 임금 및 사업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법 개정전후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10년 이상 가입으로 연금수급권이 획득되는 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로이력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함수 추정 모형은 다음 식 (4)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Y_{it} = \alpha + \beta' \cdot X_{it} + u_i + e_{it} \quad (4)$$

단, Y_{it} : 개인 i 의 t 시점에서의 소득

α : 상수항

β' : 계수벡터

X_{it} : 개인의 시간적으로 변화 가능한 t 시점에서의 독립변수(time-varying regressors)벡터

u_i : 개별근로자효과(unobservable individual-specific residual)

e_{it} : 오차항

즉, 개인 i 의 t 시점(혹은 연령) 소득을 Y_{it} 라고 하면, Y_{it} 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계수추정을 통해 생애기간 동안의 소득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Y_{it} 에 영향을 주는 X_{it} 벡터는 개인(i)과 시간(t 시점)변화에 따라 변하는 변수(time-varying regressors)로 교육, 배우자유무, 가구주여부,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u_i 는 개별근로자효과(unobservable individual-specific residual)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 연령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²¹⁾ 여기서 성 변수는 연령변수와 교차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균형패널이 될 경우 FEM모델에서 성 변수가 제거되어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상소득은 자연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세변수(t_num) 변수를 포함하였다. 한편, 교육, 배우자 유무, 가구주 여부 등은 개인에 따라 바뀔 수도 혹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X_{it} 혹은 u_i 집단 어디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념적 분류이므로 어느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분석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식 (4)를 기초로 고정효과모형(FEM, fixed-effects model)에 기초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왜냐하면, 적합성 추정결과 LM test에서 Pooled model 추정결과보다는 패널모형 분석이 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hausman test 결과에 의해 고정효과모형(FEM, fixed-effects mode)이 확률효과모형(REM)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가구소득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16>에 제시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성이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및 연령지수는 각각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갖고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체감적으로 증가하여(increasing with decreasing rate) 일정연령 이상에서는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하는 경우, 가구주인 경우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세선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인의 경상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서진교(2001), 이영훈(2001), 전승훈·강성호·임병인(2004), 김상호(2007), 강성호·전승훈·임병인(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6> 개인소득함수 추정결과

설명변수	FEM			REM			OLS		
	Coef.	S.E	P>t	Coef.	S.E	P>t	Coef.	S.E	P>t
dsexage	0.0050	0.0012	***	0.0099	0.0003	***	0.0084	0.0002	***
age	0.1115	0.0161	***	0.1042	0.0018	***	0.0938	0.0014	***
age2	-0.0013	0.0000	***	-0.0013	0.0000	***	-0.0012	0.0000	***
dspou	0.0219	0.0094	**	0.0454	0.0077	***	0.1259	0.0063	***
edu	0.0204	0.0262		0.3390	0.0122	***	0.4066	0.0065	***
dregion	0.0216	0.0111	*	0.0305	0.0074	***	0.0418	0.0047	***
dwork	0.1385	0.1705		0.0234	0.1418		0.2441	0.1743	
dhead	0.0530	0.0102	***	0.0996	0.0083	***	0.1527	0.0067	***
t_num	0.0648	0.0160	***	0.0648	0.0007	***	0.0609	0.0007	***
상수항	1.9182	0.5889	***	1.8347	0.1468	***	1.7945	0.1763	***
R2	within=0.2613 between=0.3265 overall=0.3066			within=0.2582 between=0.4208 overall=0.3870			R-squ=0.3912 Adj R-squ=0.3911		
관측치수	60,728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종속변수는 ln(개인소득)임.
 3) 세 가지 모형에 대해 LM test 및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어 동 모형의 계수를 이용하여 생애가구소득을 추정함.

생애근로소득은 <표 16>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식 (4)에 적용함으로써 각 미래시점별 개인의 근로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된 근로소득은 국민연금 적용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산출한 생애근로소득²²⁾ 및 생애기준소득은 특정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여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수식 (9)는 과거와 미래의 추정소득을 현재시점(2008년)으로 누적 환산한 생애기준소득 산출식이다. 앞 부분($\sum_{t=k}^h W_{it} \times \prod_{j=t}^h (1+\gamma_j)$)은 최초 국민연금 가입시점(k시점)에서 현재시점(h시점)까지의 소득을 모두 현재시점으로 환산한 것이며, 뒷 부분($\sum_{t=h+1}^{R-1} W_{it} \cdot d_{it} \times \prod_{j=h+1}^t \frac{(1+\pi_j)}{(1+\gamma_j)}$)은 미래의 취업률을 고려한 현재시점 이후 은퇴시점(R시점) 직전까지의 소득을 현재시점(h시점)으로 환산한 생애기준소득이다. 수식 (9)를 살펴보면, 생애기준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γ_j)과 임금상승률(π_j)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Y_i = \sum_{t=k}^h W_{it} \times \prod_{j=t}^h (1+\gamma_j) + \sum_{t=h+1}^{R-1} W_{it} \cdot d_{it} \times \prod_{j=h+1}^t \frac{(1+\pi_j)}{(1+\gamma_j)} \quad (1)$$

단, j : 가입자, k : 최초가입시점, h : 현재시점(2008년), R : 은퇴시점, W_{it} : 일정 시점(t)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d_{it} : 취업여부(취업=1, 비취업=0) γ_j : 일정시점(j)에서 할인율, π_j : 일정 시점(j)에서 임금상승률

22) 생애근로소득에는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산출된 생애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 보험료액과 연금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각 시기별 보험료액을 특정시점(2008년)의 현재가치로 표현하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산출방법은 (식 1) 생애근로소득에서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c^t)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며, 특정시점(t)에서의 보험료율 현가는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특정시점(t)에서의 보험료(C_{it})를 산출할 수 있다.

개인의 총생애보험료(TC_{it})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시점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여 왔지만, 모든 소득계층에 정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C_{it} = c^t W_{it} / (1 + \gamma_t)$$

단, c^t = 일정시점(t)에서의 보험료율

$$TC_i = \sum_{t=k}^h c^t W \times \prod_{j=t}^h (1 + \gamma_j) + \sum_{t=h+1}^{R-1} c^t W_{it} \cdot d_{it} \times \prod_{j=h+1}^t \frac{(1 + \pi_j)}{(1 + \gamma_j)} \quad (2)$$

단, c^t = 일정시점(t)에서의 보험료율

다음으로는 보험료를 일정기간(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연금수급자가 되고, 나머지는 일시금 수령자가 된다. 국민연금 무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이력이 있거나 혹은 가입대상자가 되어야 할 자가 일정기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식 (3)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식 (3)의 급여산식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획득하게 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된다. 즉, 가입자(i)의 보험료 납부이력이 120개월이상 인 경우($\text{count}(c_i^t) \geq 120$ 개월) '연금수급자'(A)가 되고, 보험료 납부이력($\text{count}(c_i^t)$)이 120개월 미만인 가입자 중 1번이상 납부경험이 있는 경우는 '일시금수령자'(B), 납부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제도도입 당시 전업주부 등 비경험자로 은퇴시기를 맞이한 '비해당자 혹은 적용제외자'(C)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B라고 할 수 있으며, B+C의 경우는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로 규정할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 및 국민연금사각지대 판별>

if $\text{count}(c_i^t) \geq 120$ 개월, then 연금 수급 (A)

if 1 개월 $\leq \text{count}(c_i^t) < 120$ 개월, then 일시금 수령 (B)

if $\text{count}(c_i^t) < 1$ 개월, then 비해당자 (C)

=> 국민연금연금사각지대=B, 공적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B+C

이러한 분석가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생애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살펴본다.

한편, 연금액 산출을 위한 급여산식은 1998년말, 2007년 7월 법 개정에 의해 1999년과 2008년 이후 가입자와 이전 가입자간 적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음의 식 (3)에 의해 최초 수급시점의 기본연

금액이 결정된다. (식 3)은 1988년 1월 부터의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이다.²³⁾

$$P_{iR} = [2.4p_1 \times (A + 0.7B) + (1.8p_2 + 1.5p_3 + \alpha p_4) \times (A + B)] \times (1 + 0.05n) \quad (3)$$

단, A : 연금수급전년도(연금수급전 3년간)의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α = 2009~2008년 소득대체율 40%로 맞추기 위한 조정계수
 p1 =총가입기간 중 88.1.~'99.03 가입기간 비율(%)
 p2 =총가입기간 중 99.4.~'07.12 가입기간 비율(%)
 p3 =총가입기간 중 08.1.~'08.12 가입기간 비율(%)
 p4 =총가입기간 중 09.1.이후 가입기간 비율(%)
 n = 20년 초과연수

나. 생애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추정

<표 17>은 앞에서의 가정과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2008년 현재 27세~59세의 향후 국민연금가입 이력을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한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비중은 현 27세~59세 중 85.5%로 나타났으며, 14.5%는 비경활 혹은 납부예외 등의 장기화로 59세까지 한번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비중으로 나타내 보면, 납부경험이 있는 85.5% 중 11.4%p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볼 수 있으므로 가입이력있는 자 중에서 13.3%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표현 할 수 있겠다. 한편, 국민연금사각지대 개념 범위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는 연금형태로 수급하지 못할 대상으로 정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25.9%(11.4+14.5%)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표 17> 연령대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추정

(단위: 명, %, 년)

구분			연령대(2008년)				전체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가입 이력 있음	일시금	빈도 비율	0 0.0	17 0.9	174 9.1	468 33.8	659 11.4(13.3)
	연금	빈도 비율	496 84.6	1,623 85.3	1,507 78.4	670 48.4	4,296 74.2(86.7)
가입이력없음		빈도 비율	90 15.4	263 13.8	240 12.5	245 17.7	838 14.5
전체		빈도 비율	586 100.0	1,903 100.0	1,921 100.0	1,383 100.0	5,793 100.0

주: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추정

이를 2008년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3) 본 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실제 자료를 활용하고 연금액 산출방식도 현실적으로 공단의 급여시스템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형태로 설정하였다.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게 될수록 국민연금 적용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수급확률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연령대별 연금수급확률을 보면, 50대 48.4%, 40대 78.4%, 30대 85.3%로 나타났다. 30세미만은 27~29세 통계여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설명은 생략한다.

연령별 특징을 보면, 50대와 40대의 수급율은 급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연금화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50대의 경우는 충분한 가입기간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40대 이후에는 대부분 국민연금 납부경험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10년 이상 납부할 확률은 보다 크지게 되므로 수급확률은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마, 30대가 노인이 되는 30년 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인구에서 7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30대가 노인이 되는 시점에서 40대, 50대의 일부도 노인으로 살아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가중평균을 고려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노령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으므로²⁴⁾ 30~40년 후 노인의 연금수급율은 70%를 상회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수급률이 일정정도 이상이면 수급권 획득 사각지대의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급여수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이도 중요한 이슈이나 본 연구에서는 수급권 획득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24)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의 수급률 장기추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IV. 연금수급권 확대에 따른 노인빈곤 완화

이제 앞에서 가정한 기본가정에 다음과 같이 납부예외율이 감소(추납)됨에 따른 연금수급권 확대와 노인빈곤 완화정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율 수준이 2008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추납이 전혀 없는 것을 가정한 분석이었다. 여기서는 납부예외기간 중 25%, 50%, 75%를 추납하게 된다고 가정²⁵⁾하고 이에 따른 수급율 변화와 노인빈곤 변화 과정을 추정하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납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수급율은 장기적으로 74.2%에서 추납비율을 25%p씩 상향조정할 때 마다 각각 0.4%p, 1.1%p, 0.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결과를 볼 때 추납에 따른 사각지대 완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이미 납부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납부예외기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8> 추납가정에 따른 연금수급권 변화

(단위: 명, %)

구분			기본	추납 25% 가정	추납 50% 가정	추납 75% 가정
가입 이력 있음	일시금	빈도	659	631	570	533
		비율	11.4	10.9	9.8	9.2
	연금	빈도	4,296	4,324	4,385	4,422
		비율	74.2	74.6(0.4)	75.7(1.1)	76.3(0.9)
가입이력없음		빈도	838	838	838	838
		비율	14.5	14.5	14.5	14.5
전체		빈도	5,793	5,793	5,793	5,793
		비율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추정

다음 표에서는 추납가정에 따라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모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입기간 및 소득대체율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27~59세로 향후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의 향후 60~65세 은퇴시점에서의 평균 가입기간은 17.9년, 소득대체율은 22.2%로 추정되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기간 및 소득대체율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연금제도가 성숙단계를 거칠수록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연금사각지대인 일시금으로 수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6.5년으로 추정되었다. 6.5년은 현행 수급권이 발생하는 10년 기준으로 볼 때 3.5년만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 이를 추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가입자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금제도 성숙을 통제된 상태에서 추납변화로 인한 가입기간 및 소득대체율 효과를 살펴보면,

25) 추납율 가정은 <부표 8> 참조

아래 표에서 횡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합계기준으로 볼 때 기본가정에서 추납비율을 25%p씩 상향조정할 때 마다 가입기간은 각각 0.7%~0.8%p, 소득대체율은 각각 0.8%~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추납가정에 따른 가입기간 및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 년, %)

연령	수급여부	기본		추납 25% 가정		추납 50% 가정		추납 75% 가정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30대	일시금	8.0		7.9		8.4		8.1	
	연금	20.3	25.5	21.5	26.8	22.5	28.0	23.6	29.3
	합계	20.2	25.5	21.4	26.8	22.4	28.0	23.5	29.3
40대	일시금	7.6		7.6		7.7		7.8	
	연금	16.4	20.1	17.0	20.8	17.4	21.4	18.0	22.1
	합계	15.5	20.1	16.1	20.8	16.8	21.4	17.4	22.1
50대	일시금	6.1		6.1		6.2		6.2	
	연금	12.4	16.7	12.5	16.9	12.8	17.3	12.9	17.2
	합계	9.8	16.7	10.0	16.9	10.2	17.3	10.4	17.2
합계	일시금	6.5		6.5		6.5		6.6	
	연금	17.9	22.2	18.7 (0.8)	23.2 (1.0)	19.4 (0.7)	24.0 (0.8)	20.2 (0.8)	24.9 (0.9)
	합계	16.4	22.2	17.2	23.2	17.9	24.0	18.7	24.9

주: 합계는 30세 미만도 포함

추납 및 연금수급권 확대에 따른 빈곤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연금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생애경상소득을 적용한 빈곤율은 전체 기준으로 13.4%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시금 수급자는 5.2%, 연금수급자는 8.1%, 가입이력없는자 0.1%로 나타났다.

이제 여기서 연금소득이 포함된 생애소득기준으로 기본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기준 빈곤율은 8.1%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시금 수급자는 5.2%, 연금수급자는 2.9%, 가입이력없는자 0.1%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소득 발생으로 인해 전체 빈곤 비율은 5.3%p감소(13.4%-8.1%)함을 알 수 있고, 일시금수급자의 변화는 없는 것에 비해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5.2%p감소(8.1%-2.9%)하여 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5.2%p 수준으로 이해된다.

이제 추납을 통해 발생하는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면, 전체기준으로 추납비율을 25%p씩 상향조정할 때 마다 빈곤율은 7.8%~8.2% 수준으로 나타나며, 기본 가정에 비해 볼 때 추납 75%를 가정한 경우도 약 0.3%p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납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0> 추납가정에 따른 빈곤 변화 효과

(단위: 년, %)

구분		생애경상 소득기준	생애소득(생애경상소득+연금소득)			
			기본	추납 25% 가정	추납 50% 가정	추납 75% 가정
일시금	빈도	299	299	292	266	253
	비율	5.2	5.2	5.0	4.6	4.4
연금	빈도	470	167	180	194	195
	비율	8.1	2.9	3.1	3.3	3.4
가입이력 없음	빈도	5	5	5	5	5
	비율	0.1	0.1	0.1	0.1	0.1
전체	빈도	774	471	477	465	453
	비율	13.4	8.1	8.2	8.0	7.8

특이한 현상은 추납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가 일시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기본가정에서는 5.2%빈곤율이든 것이, 5.0%, 4.6%, 4.4%수준으로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납의 효과는 연금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를 연금수급권 획득을 통한 빈곤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주의할 점은 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시금수급자로 있던 저소득 가입자가 추납에 의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였지만, 빈곤에서는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금수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여기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사각지대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유의할 필요 있다. 즉, 노후소득보장 전반적인 사각지대를 논의한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특수지역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사각지대를 논하여야 할 것이고, 노후소득보장 중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논한다면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논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하여서는 물리적으로 10년이상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각지대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 없이 수행된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노후소득전반에 대해 국민연금제도가 모두 책임져야하는 양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적인 제도자체의 문제이외에 사회적, 경제적 문제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오류에 기인하는 듯한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사각지대 문제는 단순히 동 문제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획기적이며 급속한 해결은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많은 정부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신중하고 단계적인 해결은 급격한 예산 소요를 막을 수 있으나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더디게 갈 수 있다. 따라서, 재정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발표후 작성 예정>

참고문헌

- 김성숙·강성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5.
- 강성호·김태완·김문길,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NPS국민연금연구원, 2008.
- 강성호·임병인, "노후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추정과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5, pp. 55~85.
- 구인화·손병돈,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5, No. 4, 2005. pp. 35~52.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 2008.5.
- 김상호,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07.9, pp.119-142.
- 석재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제53호. 2003. 5, pp. 285-309.
- 석재은, "사각지대와 연금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 안홍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소득보장연금모델의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2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12, pp 195~224.
- 이용하, 자영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가입내실화 방향, 한국연금학회 창립기념 세미나, 2010.
-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제22권 제3호, 2002.

부 록

<부표 1> 연령별 기대여명 및 은퇴기간에 대한 가정

2007년 기준 연령	남성				여성			
	기대여명	사망연도	사망연령	은퇴기간	기대여명	사망연도	사망연령	은퇴기간
26	51	2058	77	18	57	2064	83	24
27	50	2057	77	18	56	2063	83	24
28	49	2056	77	18	55	2062	83	24
29	48	2055	77	18	55	2062	84	25
30	47	2054	77	18	54	2061	84	25
31	46	2053	77	18	53	2060	84	25
32	45	2052	77	18	52	2059	84	25
33	44	2051	77	18	51	2058	84	25
34	43	2050	77	18	50	2057	84	25
35	42	2049	77	18	49	2056	84	25
36	41	2048	77	18	48	2055	84	25
37	40	2047	77	18	47	2054	84	25
38	39	2046	77	18	46	2053	84	25
39	39	2046	78	19	45	2052	84	25
40	38	2045	78	19	44	2051	84	25
41	37	2044	78	19	43	2050	84	25
42	36	2043	78	19	42	2049	84	25
43	35	2042	78	19	41	2048	84	25
44	34	2041	78	19	40	2047	84	25
45	33	2040	78	19	39	2046	84	25
46	32	2039	78	19	38	2045	84	25
47	31	2038	78	19	37	2044	84	25
48	30	2037	78	19	36	2043	84	25
49	29	2036	78	19	35	2042	84	25
50	29	2036	79	20	34	2041	84	25
51	28	2035	79	20	33	2040	84	25
52	27	2034	79	20	32	2039	84	25
53	26	2033	79	20	31	2038	84	25
54	25	2032	79	20	31	2038	85	26
55	24	2031	79	20	30	2037	85	26
56	23	2030	79	20	29	2036	85	26
57	23	2030	80	21	28	2035	85	26
58	22	2029	80	21	27	2034	85	26
59	21	2028	80	21	26	2033	85	26
60	20	2027	80	21	25	2032	85	26
61	19	2026	80	21	24	2031	85	26
62	19	2026	81	22	23	2030	85	26
63	18	2025	81	22	22	2029	85	26
64	17	2024	81	22	21	2028	85	26
65	16	2023	81	22	21	2028	86	27
66	16	2023	82	23	20	2027	86	27

주: 1)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발간한 2007년 기준 완전생명표의 기대여명을 반올림하여 사용
 2) 사망연도, 사망연령, 은퇴 기간은 기대여명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하였음

<부표 2> 월급여총액기준 연간상승률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6.02	10.03	7.72	6.02	7.83	6.72	5.62	7.14
~19세	10.77	10.45	3.23	7.79	8.85	10.15	2.63	7.70
20~24	5.40	11.50	7.01	6.18	7.93	7.12	3.05	6.88
25~29	4.91	11.82	6.50	5.11	8.30	3.85	2.58	6.15
30~34	3.97	12.96	6.32	5.14	7.58	2.40	4.77	6.16
35~39	5.38	10.24	7.05	5.59	6.34	5.39	4.93	6.42
40~44	5.25	10.19	8.08	5.65	6.56	6.95	5.77	6.92
45~49	6.91	9.21	7.00	5.71	8.02	8.14	6.80	7.40
50~54	7.75	6.82	7.75	6.42	10.31	10.11	8.34	8.22
55~59	5.14	6.17	12.03	4.27	7.37	12.93	8.02	7.99
60세~	2.94	0.68	9.37	4.58	6.05	11.36	6.62	5.94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급여액의 전년대비 연간상승률

2) * 전체는 7년 동안의 연간상승률의 평균

자료: <http://www.kosis.kr>(위치 : 주제별 > 고용·노동·임금 > 임금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사업체규모, 학력별 통계(1993년 이후))

<부표 3>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가정

(단위 : %)

구분	'07~'10	'11~'15	'16~'20	'21~'30	'31~'40	'41~'50	'51~'60	'61~
실질임금상승률	3.7	3.6	3.6	3.3	2.9	2.6	2.5	2.5
(명목임금상승률)	(6.7)	(6.3)	(6.0)	(5.3)	(4.9)	(4.6)	(4.5)	(4.5)
물가상승률	3.0	2.7	2.4	2.0	2.0	2.0	2.0	2.0

자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운영개선방향,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8.

<부표 4> 연령대별 유배우 비율

연령	유배우비율
~29	11.0
30~39	77.1
40~49	86.8
50~59	84.8
60~69	77.3
70~	49.0

<부표 5> 통계청 및 노동패널 자료에서의 5세별 인구수 비교

(단위: 천명, %)

연령별 (전국)	통계청(2008)*			노동패널(2008)**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계	48,607	24,416	24,191	35,016	(72.0)	17,265	(70.7)	17,752	(73.4)
0~4세	2,255	1,170	1,085						
5~9세	2,838	1,483	1,355						
10~14세	3,365	1,777	1,588	8	(0.2)	5	(0.3)	3	(0.2)
15~19세	3,277	1,738	1,538	3,067	(93.6)	1,628	(93.6)	1,439	(93.5)
20~24세	3,236	1,686	1,551	2,130	(65.8)	887	(52.6)	1,243	(80.2)
25~29세	3,945	2,034	1,912	3,380	(85.7)	1,755	(86.3)	1,626	(85.0)
30~34세	3,898	2,008	1,890	3,448	(88.5)	1,823	(90.8)	1,626	(86.0)
35~39세	4,385	2,243	2,142	3,378	(77.0)	1,721	(76.7)	1,657	(77.4)
40~44세	4,112	2,104	2,007	3,410	(82.9)	1,725	(82.0)	1,685	(83.9)
45~49세	4,248	2,148	2,101	3,691	(86.9)	1,814	(84.5)	1,877	(89.3)
50~54세	3,521	1,777	1,744	3,253	(92.4)	1,696	(95.5)	1,557	(89.2)
55~59세	2,498	1,242	1,255	2,572	(103.0)	1,208	(97.2)	1,364	(108.7)
60~64세	2,013	974	1,039	1,920	(95.4)	997	(102.3)	923	(88.9)
65~69세	1,817	830	987	1,735	(95.5)	823	(99.3)	912	(92.4)
70~74세	1,436	611	826	1,353	(94.2)	565	(92.6)	787	(95.4)
75~79세	936	345	591	889	(95.0)	381	(110.4)	508	(86.0)
80세이상	827	247	580	782	(94.6)	236	(95.8)	546	(94.1)

주: 1) * 2006.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하는 인구(외국인 포함)

2) ** 한국노동패널 11차조사자료(2008년 기준)에서 가중치 적용한 인구수임

3) () 안은 통계청 인구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kosis 자료) ; KLIPS 11th 원시자료

<부표 6> 경제활동인구 추이

구분	연령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75년
남자	18~19	17.7	17.7	17.7	17.7	17.7	17.7	17.7	17.7	17.7
	20~21	35.1	37	37	37	37	37	37	37	37
	22~24	46	47	53	60	60	60	60	60	60
	25~29	74.7	77.2	79.3	79.3	79.3	79.3	79.3	79.3	79.3
	30~34	89.8	91.4	91.4	91.4	91.4	91.4	91.4	91.4	91.4
	35~39	92.3	92.4	92.4	92.4	92.4	92.4	92.4	92.4	92.4
	40~44	92.1	93.6	94.8	94.8	94.8	94.8	94.8	94.8	94.8
	45~49	90	90.2	90.5	90.5	90.5	90.5	90.5	90.5	90.5
	50~54	86.7	88.2	90	90	90	90	90	90	90
	55~59	78.1	79	81.1	82.3	83.6	85	86.3	87.7	88.4
	60~61	68.9	67.5	68.2	69.2	70.2	71.4	72.6	73.9	74.5
	62~64	62.1	61	60.8	61.5	62.5	63.4	64.7	65	65
	65~69	53.4	52.2	51.8	52.5	53	54.4	55	55	55
	70~74	38.2	35.7	32	29.6	28.6	28	28.2	28.3	28.6
	75~	22.5	22.3	18.9	17.6	15.3	14	13.6	13.6	13.6
여자	18~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0~21	45.1	45.6	46.6	47.1	47.6	48.1	48.6	49.1	49.4
	22~24	63.9	65.5	67.5	68.5	69.5	70.5	71.5	72.5	73
	25~29	63	65	69	73	77	81	82.4	83.7	84.4
	30~34	48.6	50.6	54.6	58.6	62.6	66.6	68.3	69.9	70.8
	35~39	57.3	58.8	61.8	64.8	67.8	70.8	72.4	74.1	74.9
	40~44	64	65	67.1	70.1	73.1	76.1	76.8	77.4	77.8
	45~49	61.6	62.6	64.6	66.6	68.6	70.6	72.6	74.6	75.6
	50~54	57.4	58.4	60.4	62.4	64.4	66.4	68.4	70.4	71.4
	55~59	48.1	48.9	50.9	52.9	54.9	56.9	59.4	61.9	63.2
	60~61	44.8	44.3	46.1	47.8	49.8	52.1	54.3	56.5	57.6
	62~64	41.7	40.2	39.4	38.7	39.2	40.2	41.4	42.6	43.3
	65~69	33	31.4	30.1	29.8	28.9	29.3	30.3	31.5	32.1
	70~74	24.5	24.8	23.9	22.4	21.4	21	21	21	21
	75~	9.8	10.2	10.9	11	10.1	9.6	8.8	8.7	8.8

자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2008).

<부표 7>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현황(2008)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사업장 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소계	농어민	자영자		
총계	19,060	10,238	112	8,709	3,545	252	3,293	5,164	(72.9)
18~19세	71	49	0	22	1	0	1	22	(69.7)
20~24세	971	573	0	397	13	0	13	384	(60.5)
25~29세	2,635	1,667	0	968	77	0	76	891	(66.2)
30~34세	2,714	1,688	2	1,025	194	1	192	831	(69.4)
35~39세	2,830	1,704	4	1,122	407	6	401	715	(74.7)
40~44세	2,829	1,566	7	1,257	585	18	567	672	(76.2)
45~49세	2,715	1,337	13	1,365	741	42	699	624	(77.0)
50~54세	2,499	1,055	20	1,424	839	81	758	585	(76.6)
55~59세	1,748	601	19	1,129	689	103	586	439	(74.9)
60세이상	47	0	47	0	0	0	0	0	(100.0)

주: ()안은 전체가입자 대비 납부자 비율(1-납부예외율)

<부표 8> 추납율에 따른 연령별 납부율

구분	기본	(25%추납)	(50%추납)	(75%추납)
총계	(72.9)	(79.7)	(86.5)	(93.2)
18~19세	(69.7)	(77.3)	(84.9)	(92.4)
20~24세	(60.5)	(70.4)	(80.2)	(90.1)
25~29세	(66.2)	(74.6)	(83.1)	(91.5)
30~34세	(69.4)	(77.0)	(84.7)	(92.3)
35~39세	(74.7)	(81.0)	(87.4)	(93.7)
40~44세	(76.2)	(82.2)	(88.1)	(94.1)
45~49세	(77.0)	(82.8)	(88.5)	(94.3)
50~54세	(76.6)	(82.4)	(88.3)	(94.1)
55~59세	(74.9)	(81.2)	(87.4)	(93.7)
60세이상	(100.0)	(100.0)	(100.0)	(100.0)